## 붙임 1 신청자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

	지원자격	제출서류
	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/ 교육급여 수급자	<ul> <li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</li> </ul>
	특수교육 대상자	<ul> <li>특수교육 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 1부 (특수교육청에서 발급)</li> </ul>
그밖에 사회ㆍ경제적 이유★	도서·벽지 거주자 읍·면지역 거주자 • 학교장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 -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	<ul> <li>주민등록 등본 1부</li> <li>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021년, 1년) 1부</li> <li>학교장 추천 심의회 회의록 1부</li> <li>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021년, 1년) 1부</li> </ul>
	•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교육보호 대상자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) -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-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·18 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	<ul> 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</li> <li>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(정부24(온라인) 혹은 보훈청(오프라인)에서 발급) 1부</li> </ul>
	◆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	<ul> 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</li> <li>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정부24(온라인) 혹은 동사무소(오프라인) 발급)1부</li> </ul>
	<ul> <li>법정 차상위 계층(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)</li> </ul>	<ul> 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</li> <li>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차상위 계층 확인서(복지로 발급) 1부</li> </ul>
	<ul> <li>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의 자녀</li> </ul>	<ul> <li>교육비지원확인서(해당 학교에서 발급) 1부</li> </ul>
	<ul> <li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(법정 한부모가족)</li> </ul>	<ul> 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</li> <li>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</li> </ul>
	<ul> <li>아동복지전담기관(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)에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</li> </ul>	<ul> <li>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아동신상카드, 아동입소의뢰서,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입소확인증 중 1부</li> </ul>
	<ul> <li>다문화가족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) 자녀</li> </ul>	<ul> <li>공통: 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, 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결혼이민자의 자녀: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</li> <li>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: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</li> <li>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021년, 1년) 1부</li> </ul>
	<ul> <li>소년 소녀 가장, 조손가정의 자녀</li> </ul>	<ul> 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</li> </ul>
	• 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)의 자녀	<ul> 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</li> <li>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021년, 1년) 1부</li> </ul>
	◆ 순직 군경·소방관·교원·공무원의 자녀	<ul> 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</li> <li>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순직증명서 1부</li> </ul>
	◆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	<ul>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</li><li>보호자의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 1부</li></ul>
	<ul> <li>환경미화원 자녀(기초/광역자치단체에 소속)</li> <li>군인(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)의 자녀</li> <li>경찰(15년 이상의 재직 중인 경위 이하)의 자녀</li> <li>소방공무원(15년 이상의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)의 자녀</li> </ul>	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  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1부
	◆ 산업재해근로자 자녀	<ul> <li>가족관계증명서 1부(보호자 기준)</li> <li>재해등급확인서 1부</li> <li>(아니면) 유족급여지급확인서 또는 산업재해 사망증빙서류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</li> </ul>